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60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603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가소478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9. 5. 1.

판결 선고 2020. 1. 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가소478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7. 10.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1. 12.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4.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8. 11. 12.경에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2018. 11. 14.로부터 2주 이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 20.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1,500만 원, 월 임료 없음, 기간 2014. 2. 17.부터 2016. 2. 17.까지로 정하여 부산 동래구 C빌라 2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입주하였다.

나. 선행사건의 확정판결

(1) 제1심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5가단222483).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3,273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2016가단28633)를 제기하였다.

③ 이 법원은 2016. 9. 8. 본소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반소는 본소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하였다.

(2) 제2심 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56114(본소), 2016나56151(반소)호로 항소하면서, 건물 훼손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2,773만 원으로 감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를 추가하는 취지로 반소취지를 변경하였다.

② 항소심 법원은 2018. 1. 18.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반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3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8다220031(본소), 2018다220048(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8. 5. 3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8. 6. 7.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진행된 위 사건을 통틀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의 반소와 그 소송물이 동일하고, 당사자도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1)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는바, 피고 주장의 전소인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2018. 6. 7. 확정되어 소송 계속이 소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소가 관련 사건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더라도, 관련 사건의 반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양 소송은 그 소송물이 달라 관련 사건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와 무관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 원만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2014. 2. 17. 원고 몰래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침입한 뒤, 2017. 6. 16.까지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7.부터 2017. 6. 16.까지 월 임료 상당액인 2,000만 원(=월 50만 원 × 40개월)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기간(2014. 2. 17. ~ 2016. 2. 16.)의 부당이득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1,500만 원 중 2014. 1. 17.에 200만 원, 2014. 2. 17.에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전 임차인 E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원고에 대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2.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확정된 사실을 반복할 정도의 증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조된 증거로 판결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2016. 2. 17. ~ 2017. 6. 16.)의 부당이득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분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구분건물의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권자인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별도의 임료 지급 약정이 없이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당시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고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점유 부분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성익경

판사김종수

판사주은영

1) 피고 제출의 추완 항소장에는 '(원고는)이 사건 소송을 통해 중복하여 소를 제기하고 있기에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추후 소송사기로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주장을 이와 같다고 해석한다.

2)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소장과 2018. 12. 14.자 답변서 및 2019. 4. 29.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따라 이와 같다고 정리한다.